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04

발의연월일: 2022. 6. 13.

발 의 자:한무경·권명호·김석기

김정재 · 노용호 · 송언석

양금희 · 임이자 · 조수진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 기를 도모하는 공적 공제제도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2007년 9월 출범한 이후 2022년 5월 현재 재적가입자 160만명, 부금조성액이 19조 3천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그러나 복지사업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가입자에 대한 복지 수요 등에 대처하는데 애로가 있음.

한편 다른 공제회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공제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회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및 "기금조성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다른 공제회와 같이 가입자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효과적인 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 후생사업
- 4.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 <u>①</u>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자를 위한 각종 복지·후생
	<u>사업</u>
<u> <신 설></u>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u>3.</u> <u>제1호 및 제2호의</u> 사업과 관	<u>5.</u>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련된 부대사업	
<u><신 설></u>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
	<u>익사업을 할 수 있다.</u>